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13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정복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16.

다. 회 부 일 :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u>따른 학교</u>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3. (생략)	제2조(정의) ----- -----. 1. ----- ----- ----- <u>따른 학교·기관</u> ----- -----. 2. 3. (현행과 같음)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학교</u>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4조(학교급식 대상) ----- ----- ----- <u>해당하는 학교·기관</u> ----- -----. 1. ~ 4. (현행과 같음)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대안교육기관</u> 6. (현행 제5호와 같음)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¹⁾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급식 대상

1)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을 ① 유치원(국립·공립유치원 및 원아 수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②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③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④ 대안
 학교, 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
 학하는 학생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법 제8조²⁾ 및 제9조³⁾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가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급식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제4조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범위 입법 연혁 >

구분	1981년 제정	1993년 개정	1999년 개정	2019년 개정	2020년 개정
유치원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유치원 제외)
초등학교	○	○	○	○	○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산업체부설학교	○	○	○	○	○
중학교	1985년부터 순차 적용	○	○	○	○
고등학교	-	-	○	○	○
특수학교	-	○	○	○	○
대안학교	-	-	-	○	○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구)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의무교육 대상학교(초등학교)와 (구) 「교육법」 제103조의4 및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3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특수학교”가 추가되었고, 1999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중학교·고등공민학교”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가 추가적으로 명시되었으며, 2019년 12월 「학교급식법」 개정

(2020.12.11. 시행)으로 “대안학교”가 추가되었고, 2020년 1월 「학교급식법」 개정(2021. 1. 30 시행)으로 “유치원”이 추가(원아수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제외)되었고, 2021년 12월 「학교급식법」 개정(2022. 6.29. 시행)으로 유치원의 급식대상이 확대(원아수 50명 미만 사립유치원 제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개정안은 학교급식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5)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4)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 5. (생략)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 ④ (생략)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이하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황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 ③ ~ ⑤ (생략)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외에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안교육기관”으로 교육감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을 보호하고 인가 대안학교 외의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 목적으로 2021년 1월 12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해당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6월 기준으로 256개소의 기관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됨⁶⁾.

<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

(단위: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8	9	7	7	12	11	2	1	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4	7	6	11	11	7	6	256

자료: 교육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⁷⁾에

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 12.) 이전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273개소로 약 14,000명의 학생(평균 51.3명, 2019년 조사 기준)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7)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예시)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따라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에게도 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급식 제공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교급식의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적합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교사 및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기

3.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원 등)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략)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생략)

8)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

준 준수 의무⁹⁾ 및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¹⁰⁾ 등의 책임이 따르는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¹¹⁾ 및 미인가 교육시설의 규모, 관리체계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일반학교에 비해 완화된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추고 교육청에 등록·운영하는 기관으로,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제정된 「학교급식법」의 적용은 오히려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운영에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와 함께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

·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0) 「학교급식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교의 또는 파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11)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양¹²⁾된 사무로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¹³⁾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¹⁴⁾

12)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2004.4월)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학생 중식 지원”을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2005년 8월)하였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1. 초·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13) 2024학년도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따르면, 총 지원예산의 규모는 7조 959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은 5년간 총 630억 6,900만원으로 연평균 126억 1,400만원으로 추계되었음.

【2024학년도 무상급식 지원 계획(2024. 3.1.기준)】

학교급	학생수 (천명)	지원 학생수 (천명)	재원부담(억원)				
			교육청	지자체			계
				광역	기초	소계	
유치원	531	531	3,334 (66.8%)	780 (15.6%)	875 (17.6%)	1,655 (33.2%)	4,989 (100%)
초중등학교	5,288	5,288	43,946 (66.6%)	10,642 (16.1%)	11,382 (17.3%)	22,024 (33.4%)	65,970 (100%)
합계	5,819	5,819	47,280 (66.6%)	11,422 (16.1%)	12,257 (17.3%)	23,679 (33.4%)	70,959 (100%)

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학교급식 대상 등 (안 제4조 등)	12,098	12,352	12,611	12,876	13,133	63,069	12,614

주1) 급식에 관한 경비 중 ‘급식시설·설비비’를 제외하고, ‘식품비 및 운영비’만을 대상으로 함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급식에 대한 기존 지원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시·도 등의 기존 지원금 예산이 전액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로 사용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

3)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현황(2023.4.1.)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기관수 및 학생수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4개 교육청 및 7개 일반 지자체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을 통해 급식비 지원 중임

아울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여건상 학교급식법령의 급식시설, 각종 기준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규제·지도·감독만 강화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급식경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시 관련 지자체 조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도 비슷한 견지에서 대안교육기관 여건상 급식시설 및 관리기준 준수가 어려우며 규제만 강화될 우려가 있어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도 교육청 조례 개정을 통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의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식시설의 설치, 영양교사 등 인력 배치 등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의 제반 여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84